

**「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」 신·구 조문대비표**

현행	개정안	비고
<p>제2조(정의)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“단순가공”이란 재포장, 소분, 선별, 구분, 분쇄, 세척, 건조, 냉장, 냉동, 단순혼합, 단순절단, 단순가열, 단순조립 등으로 「대외무역관리규정」 제85조 제8항을 준용한다.</p> <p>6. ~ 7. (생략)</p> <p>8. “식용”이란 인간이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물질로 「식품위생법」의 적용을 받는 것을 말한다.</p> <p>9. (생략)</p> <p>10. “유통이력대상물품”이란 법 제240조의2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을 말한다. 이 경우 지정물품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----- ----- ----- ----- 「대외무역관리규정」 제85조 제8항-----.</p> <p>6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----- ----- 「식품위생법」----- -----.</p> <p>9. (현행과 같음)</p> <p>10. ----- ----- -----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띄어쓰기 오류 수정</li>   <li>● 띄어쓰기 오류 수정</li>   <li>● 인용 고시 및 띄어쓰기 오류 수정</li> </ul>

이 수입통관 후 재포장·분할포장·단순가공을 거쳐 「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」 제11조에 따라 원산지표시의무가 부여되는 때에는 그 물품을 포함한다. 다만, 자가사용목적 수입물품, 휴대반입물품, 수출 후 재수입물품 등은 유통이력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.

11. (생략)

제4조의2(유통이력심의위원회) ① ~ ③  
(생략)

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위원장 및 위원은 자기의 이해관계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석하거나 의결하지 못한다.

제8조(유통이력신고 등) ① 유통이력신고 의무자는 별표1의 수입물품을 양도하는 경우(양수자가 재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는 양도일부터 5일 이내에

-----  
----- 「원산지표시제도  
운영에 관한 고시」 제11조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11. (현행과 같음)

제4조의2(유통이력심의위원회) ① ~ ③  
(현행과 같음)

④ ----- 과반수의 -  
----- 과반수의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제8조(유통이력신고 등) ① -----  
----- 별표 1-----  
-----  
-----

-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반영
-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반영 및 띄어쓰기 오류 수정

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신고기간에는 양도 초일과 토·일요일, 공휴일을 포함하지 아니한다.

1. ~ 6. (생략)

② ~ ③ (생략)

④ 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유통이력대상물품이 『수입통관 후 원산지표시의무 이행통지 대상물품』인 경우에는 『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』 제11조에 따른 의무도 준수하여야 한다.

⑤ 유통이력신고의무자로서 동일한 사업자가 자기 책임하에 다수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유통이력 동일사업장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정을 받은 경우 주된 사무소에서 일괄하여 유통이력신고를 할 수 있다. 이때 신청서류는 우편, FAX,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

-----  
-----  
----- 첫날 -----  
-----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  
----- 수입통관 후 원산지표시의무 이행통지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「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」 제11조 -----  
-----

⑤ -----  
----- 책임 하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----- 팩스 -----  
-----

- 문장부호 및 띄어쓰기 오류 수정
- 인용 고시 수정
- 띄어쓰기 오류 수정
-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반영

할 수 있다.

⑥ (생략)

제8조의2(유통이력신고 등 관리) ① ~

③ (생략)

④ 제2항에 따른 유통이력의무자 관할  
세관장은 유통이력대상물품이 관할지  
역 외의 장소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 물  
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해당 물품의  
관리업무를 물품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 
이관하여야 한다.

제10조(유통이력조사 및 결과등록 등) ①

세관장은 법 제240조의3제1항에 따라  
유통이력신고의무자 사업장에 출입하  
여 영업관계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는  
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  
사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조사는 소  
매업자를 포함한다.

1. ~ 4. (생략)

5. 그 밖에 수입통관시 세관장이 명령한  
조건에 이행 여부

-----.

⑥ (현행과 같음)

제8조의2(유통이력신고 등 관리) ① ~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물품 소재지  
관할 세관장에게 해당물품의 재고확인  
등을 요청 할 수 있다.

제10조(유통이력조사 및 결과등록 등) ①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~ 4. (생략)

5. 그 밖에 수입통관 시 -----  
-----

- 주사무소와 물품 장치 장소가  
원거리인 경우 관리주체 변경

- 띄어쓰기 오류 수정

② (생략)

③ 유통이력신고의무자와 소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장부열람 또는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·방해·기피해서는 안 된다.

④ (생략)

제11조(반입명령) ① 세관장은 법 제238조 및 「관세법 시행령」 제24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통이력관리물품을 적발한 때에는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후 3개월이 경과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1. ~ 2. (생략)

② (생략)

③ 제2항에 따라 유통이력대상물품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「보세화물 관리에 관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 
-----  
-----  
사유 없이 -----  
안 된다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반입명령) ① -----  
----- 「관세법 시행령」 제245조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1. ~ 2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 
----- 「보세화물관리에

• 띄어쓰기 오류 수정

• 띄어쓰기 오류 수정

• 인용 고시 및 띄어쓰기 오류 수정

한 고시」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의 폐기절차를 준용한다.

④ (생략)

⑤ 그 밖에 보세구역반입명령에 관한 절차는 『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』 제107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 <고시 제8조제2항 관련>

※ 작성요령

- 양도 후 5일 이내에 작성하여 주소지 인근 세관장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- \* 기간(5일)은 판매 초일, 토요일, 공휴일은 제외하고 계산

관한 고시」 제26조-----  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  
---- 「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 제107조-----  
-----.

[별지 제1호서식] <고시 제8조제2항 관련>

※ 작성요령

- -----  
-----.
- \* ----- 첫날, -----  
-----

- 인용 고시 및 띄어쓰기 오류 수정
-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반영

##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

1. ~ 55. < 삭제 >

56. 에이치(H)형강 <지정기간 : 2022.8.1 ~ 2024.7.31>

연번	종 류	품목번호	표준품명	비고
1	에이치(H)형강	7216.10-3000	H sections	
2	에이치(H)형강	7216.33-3000	H sections (Less than 300mm in height)	
3	에이치(H)형강	7216.33-4000	H sections (300mm or more but not more than 600mm in height)	
4	에이치(H)형강	7216.33-5000	H sections (More than 600mm in height)	
5	에이치(H)형강	7228.70-1010	H sections (Containing by weight 0.0008% or more of boron)	
6	에이치(H)형강	7228.70-1090	H sections(Other)	

57. ~ 58. < 삭제 >

59. 플랜지(Flange) <지정기간 : 2022.8.1 ~ 2024.7.31>

연번	종 류	품목번호	표준품명	비고
1	플랜지(Flange)	7307.21-0000	Stainless Steel Flanges	
2	플랜지(Flange)	7307.91-0000	Steel Flanges	

60. ~ 63. < 삭제 >

64. 맨홀뚜껑 <지정기간 : 2022.8.1 ~ 2024.7.31>

연번	종 류	품목번호	표준품명	비고
1	맨홀뚜껑	7325.10-0000	Manhole cover (non-malleable cast iron)	
2	맨홀뚜껑	7325.99-1000	Manhole cover (cast iron)	